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중 FTA 추진현황과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趙英花

2013年 2月

한·중FTA 추진현황과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黃正奉

趙英花

이 논문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趙英花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4
II. 한·중 교역 투자현황과 필요성.....	5
1. FTA 에 관한 일반적 이론.....	5
1) FTA 의 개념.....	5
2) FTA 의 유형.....	6
2. 한·중 교역현황과 투자현황 .....	8
1) 한·중 양국간 교역현황.....	8
2) 한·중 양국간 투자현황.....	11
3. 한·중 FTA 의 필요성.....	18
1) 경제적 측면.....	18

2) 정치·외교적 측면 .....	21
III. 한·중 FTA 에 대한 추진현황과 논의 경과.....	26
1. 중국의 추진현황 .....	26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6
2)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추진 동기 .....	31
2. 한국의 추진현황 .....	35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5
2) 한·중 FTA 에 대한 한국의 추진 동기 .....	39
3. 한·중 FTA 논의 경과.....	42
4. 한·중·일 FTA 추진 개시 .....	46
IV. 한·중 FTA 의 경제적 기대 효과.....	47
1. 한·중 FTA 의 이론적 기대 효과 .....	47
1) 긍정적 효과.....	47
2) 부정적 효과.....	54
3) 기타 효과 .....	55
2. 한·중 FTA 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 .....	56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56
2) 한·중 FTA 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결과 .....	60
V. 한·중 FTA 분야별 추진 방안.....	70

1. 상품분야.....	70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70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72
2. 서비스분야.....	73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73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74
3. 원산지규정.....	76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76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77
4. 무역구제분야.....	81
1) 한·중 FTA 예상쟁점.....	81
2) 한·중 FTA 대응방안.....	84
VI. 결론.....	87
참고문헌.....	90
영문초록.....	92

## 〈표 목 차〉

〈표 2-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	7
〈표 2-2〉 한·중 양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	9
〈표 2-3〉 중국 대한국 수출입 추이 .....	9
〈표 2-4〉 최근 중국 수출입 추이 .....	10
〈표 2-5〉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황 .....	12
〈표 2-6〉 연도별 한국 대중국 투자현황 .....	14
〈표 2-7〉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 .....	15
〈표 2-8〉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 .....	17
〈표 3-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27
〈표 3-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36
〈표 3-3〉 한·중 FTA 논의 경과 .....	43
〈표 4-1〉 WTO 가입 양허스케줄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 약속 .....	57
〈표 4-2〉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평균관세율 .....	58
〈표 4-3〉 관세의 완전철폐에 따른 영향 .....	63
〈표 4-4〉 한국과 중국의 GDP 에 대한 영향 .....	64
〈표 4-5〉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66
〈표 4-6〉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67
〈표 4-7〉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	68
〈표 5-1〉 한·중 양국의 서비스 분야 유보품목 수와 비중 .....	73
〈표 5-2〉 ASAEN 과의 FTA 에서 한·중 원산지 결정기준 .....	78

## <그림목차>

<그림 4-1> 한·중 FTA 체결한 이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49
<그림 4-2> 한·중 FTA 체결한 이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50
<그림 4-3> 한·중 FTA 의 규모의 경제 효과.....	52
<그림 4-4> 한·중 FTA 의 경쟁 촉진 효과 .....	53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1949년 새 중국 설립 후 62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및 국력이 뚜렷이 강화되어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 왔다. 중국의 GDP는 1952년 679억 위안에서 2011년에 47조 670억 위안에 달해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며, 2011년 하루에 창출한 부가가치가 1952년 1년의 총량에 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은 6조 9,884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주변국가의 정치·외교단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정세를 따라서 세계화, 협력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많은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여러 선진국이 가입함에 따라 중국도 발맞추어 세계화 대열에 들어섰다.

최근 국제 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세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중국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와 같은 경제 흐름을 타고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sup>1)</sup>) 가입하였다. 그리고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

1)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한국, 중동의 GCC<sup>2)</sup>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SACU<sup>3)</sup>) 등과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중·일과 인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경제무역협력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공간과 협력구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위축되면서 중국의 수출시장은 불리하고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기술상품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개발·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으면서 기술력이 앞서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광대한 시장 수요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FTA를 확산 등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대비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경쟁력과 보완성 및 경합 정도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고찰과 함께 능동적인 FTA 추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무역에

---

2) 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6개국을 포함.

3)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은 1969년 창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등 5개국이다.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양국간 무역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무역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북아의 제일 큰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공업화를 달성하고 있지만 양국간의 FTA 체결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지역적으로도 인접하고,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중간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 고관세 철폐,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의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 국내투자유치,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 증가, 양국시장 점유율확대로 인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 관세를 맺는 것은 통상마찰 해소와 보호무역조치 억제 효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농수산업 등의 기반 약화로 중국산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의 영향으로 한국과의 무역 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 자동차산업 등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에 따라 수입 증가로 인한 대 한국 무역지수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제품 수출 증가로 인한 중국내 물가 인상은 중국 소비자후생의 하락 우려를 낳고 있다.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하여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 FTA 체결과 관련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현황을 분석한다. 나아가 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양국간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과 함께 FTA 추진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중점이 두어져 있다.

연구의 기본이 될 자료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등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서적, 학술지, 업무보고서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중국통상부(中國通商部),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FTA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정리하고, 한·중 교역현황과 투자현황, 한·중 FTA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함께 한·중 FTA의 논의 경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FTA 전문연구기관들의 실증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중 FTA에 대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 FTA의 능동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 II. 한·중 교역 투자현황과 필요성

### 1. FTA에 관한 일반적 이론

#### 1) FTA의 개념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 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의 관세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요소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규율대상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좁은 의

미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적·사회·문화의 교류 등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sup>4)</sup>

## 2) FTA의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

4)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동 연구소, 2010, pp. 6.

5)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9, p. 88.

<표 2-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유형	특징
국가 사이의 자유 무역협정	국가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국가간 시장의 확대 또는 무역진출의 발판마련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형태 NAFTA가 대표적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협정 체결의 당사자 해당 지역협력체에 당사국이 편입되거나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 칠레와 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와 EU의 자유 무역 협정이 대표적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체들이 협정 체결이 당사자 지역협력체 사이의 통합 NAFTA또는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자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8, P.3

첫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한·미 FTA 등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예이며,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NAFTA와 MERCOSUR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MERCOSUR와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 2. 한·중 교역현황과 투자현황

### 1) 한·중 양국간 교역현황

중국을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1년에 양국간 교역규모는 총 2,206.1억 달러(한국통계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64억 달러 이후 19년간 교역규모가 연평균 2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7대 교역상대에서 2011년에 EU(4,275.1억 달러), 일본(3,416.9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중국내 수입시장점유율도 1992년 1.4%에서 2011년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2> 한·중 양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1년)

(단위: 억 달러)

순위	중국		한국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EU	4,275.1	중국	2,206.1
2	미국	4,424.2	일본	1,079.9
3	일본	3,416.9	미국	1,007.7
4	한국	2,445.9	독일	264.6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상무부(<http://yzs.mofcom.gov.cn/>)

한편 한국측 입장에 보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206억 달러로 수교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1992년 3.4%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2011년 21.7%까지 대폭 상승하였다.

2011년 한·중 양국간 총 교역액은 2,446억 달러(중국통계기준)로서 1992년(64억 달러)수교 당시 교역액의 38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였고, 2011년 중국의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0%, 8.1% 증가하였다.

<표 2-3> 중국 대한민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5년	1,119.3	24.3	351.1	26.2	768.2	23.4	-417.1
2006년	1,343.1	20.0	445.3	26.8	897.8	16.9	-452.5
2007년	1,598.9	19.1	561.4	26.1	1,037.6	15.6	-476.2
2008년	1,861.1	16.2	739.5	31.7	1,121.6	8.1	-382.1
2009년	1,557.4	16.3	536.2	-27.4	1,021.2	-8.9	-485.0
2010년	2,068.3	32.8	688.1	28.3	1,380.2	35.2	-692.1
2011년	2,445.9	18.2	829.2	20.5	1,616.7	17.1	-787.5
2012년(1월~9월)	1,866.7	3.0	662.9	6.7	1,203.8	1.2	-540.9

자료: 중국상무부 무역통계 (<http://yes.mofcom.gov>)

한편, 2012년 1월~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62.9억 달러(총수출 대비23%), 수입은 1,203.8억 달러(총수입 대비16%)를 기록하여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1,866.7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한편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2년까지 미국이 한국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수입의 경우, 2006년까지 일본이 제1위 수입 대상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중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표 2-4> 최근 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5년	7,623.2	28.4	6,602.2	17.7
2006년	9,690.7	27.2	5,814.8	19.9
2007년	12,172.1	25.6	9,558.2	20.7
2008년	14,285.5	17.2	11,330.9	18.5
2009년	12,003.6	-16.0	10,005.7	-11.6
2010년	15,768.1	31.4	13,754.5	37.5
2011년	18,965.6	20.3	16,918.8	23.0
2012년(1월~9월)	14,945.7	7.5	12,975.0	3.9

자료: 중국상무부 무역통계 (<http://yes.mofcom.gov.cn/>)

2002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표 2-3> 및 <표 2-4>참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자를 많이 유치하여 수출입 무역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한편 한국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출주도형경제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수출입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간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간 교역의 상호보완성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내

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교 초기인 1997년까지는 1차 상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1997년 이후 중화학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1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 등 보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1992년 이후 2011년까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전기·전자 설비, 직물·의류, 석탄, 전자부품, 수산물, 곡물, 철강재 등이고,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상품으로는 전자통신 기자재,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철강, 섬유제품 및 운송기계 등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 수입품은 과거에는 의류·직물, 농산물, 광산물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전자·IT부문 제품의 비중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급증에 따라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2011년의 787억 달러(중국통계기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다. 지속적인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측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고 반덤핑조치를 초래하는 등 양국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중국의 커다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 한국 기술의존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이 전 세계를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없이는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2) 한·중 양국간 투자현황

###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9년 누계기준(累計基準) (지식경제부신고기준)으로 총 6,373건에 달해 투자건수로는 전체 대한국 외국인 투자(총 45,822건, 1,570.5억 달러)중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액으로는 26.6억 달

러로 전체투자의 1.7%에 불과해 아직은 양국간 투자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2-5>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건수	금액
2002년	422	24.9
2003년	522	50.2
2004년	596	1,164.7
2005년	672	68.4
2006년	334	39.6
2007년	364	384.8
2008년	389	336.4
2009년	396	145.4
누계(1962년-2009년)	6,373	2,660.6

자료: 지식경제부 200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M&A<sup>6)</sup>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은 2003년 중국의 京東方 (BOE)그룹의 하이닉스반도체 TFT·LCD<sup>7)</sup> 사업부 인수와 2004년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SAIC)의 쌍용 자동차의 51%의 자본 인수였다. 이러한 최근의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한국의 첨단기술 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을 주요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시장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6)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은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7)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는 박막 트랜지스터(TFT)기술을 이용하여 화질을 향상시킨 액정 디스플레이(LCD)의 변종이다.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상무부는 2004년 7월 [해외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장려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등 운수교통설비 제조, 화공원료 제조,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이며,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소매, R&D(research and development) 건축, 운수교통 등이 포함되어있다.

#### 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 형태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이전에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현지생산을 위하여 미국 일본도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국 원화의 강세 및 국내 인건비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후발국에 진출하는 동시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1985년 홍콩을 통한 우회적 투자로 시작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 잠시 주춤하다가 그 후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1.5%억 달러였던 대중국 투자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11년 36.8%억 달러(중국통계수준)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대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41.02%로 가장 높았다. 그 후 비중이 다소 낮아져 2011년의 경우 26.28% 수준을 보였다.

<표 2-6> 연도별 한국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연도	실행액	한국비중(%)
1996년	1.2	1.1
1997년	3.8	1.4
1998년	7.9	2.3
1999년	11.9	3.2
2000년	15.0	3.6
2001년	21.4	4.7
2002년	18.0	4.0
2003년	12.8	3.2
2004년	14.9	3.7
2005년	21.5	4.6
2006년	27.3	5.0
2007년	38.9	8.4
2008년	36.8	10.3
2009년	51.7	8.6
2010년	44.9	6.2
2011년	62.5	4.9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은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0년 말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대중국 투자총액 178억 달러 가운데 제조업 투자가 149억 달러로 83.9%를 점유함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도소매업 투자가 9억 달러로 5.1%를, 서비스업 투자가 5억 달러로 3.0%를, 숙박음식점 투자가 3억 4천만 달러로 1.9%를, 부동산업 투자가 3억 3천만 달러로 1.8%를, 운수창고업 투자가 1억 3천만 달러로 0.7%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1차산업 투자를 포함한 여타 업종에 대한 투자는 1억 달러 미만으로 점유율 역시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표 2-7>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건, %, 천 달러)

업종	신고 건수	비율	신고 금액	비율	투자 건수	비율	투자 금액	비율
합계	18,352	100.0	26,812,680	100.0	16,426	100.0	17,815	100.0
농림 어업	279	1.5	161,723	0.6	239	1.5	78,589	0.4
광업	90	0.5	247,875	0.9	73	0.4	59,250	0.3
제조업	14,570	79.4	21,812,997	81.4	12,996	79.1	14,943,125	83.9
건설업	261	1.4	762,157	2.8	231	1.4	402,673	2.3
도소 매업	1,162	6.3	1,167,300	4.4	1,069	6.5	908,651	5.1
운수창고업	113	0.6	231,671	0.9	99	0.6	126,772	0.7
통신업	41	0.2	171,081	0.6	36	0.2	95,521	0.5
금융보험업	4	0.0	1,610	0.0	4	0.0	976	0.0
숙박음식점 업	594	3.2	684,308	2.6	533	3.2	336,907	1.9
서비스업	1,142	6.2	995,452	3.7	1,059	6.4	536,596	3.0
부동산업	95	0.5	572,106	2.1	86	0.5	324,508	1.8
기타	1	0.0	4,400	0.0	1	0.0	1,437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그러나 장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된다면 업종별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투자지역도 연해지역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륙지역이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여건과 기업환경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한국, 홍콩, 대만 등의 투자를 비롯해서 여타 외국인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은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중국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총액 149억 가운데 전자통신장비업 투자가 40억 달러로 26.6%를 점유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수송기계업 투자가 20억 달러로 13.3%를, 석유화학업 투자가 16억 3천만 달러로 10.9%를, 1차 금속업 투자가 10억 달러로 6.5%를, 비금속광물업 투자가 9억 달러로 5.7%를, 음식료품업투자가 7억 달러로 4.7%를, 조립금속업 투자가 6억 달러로 3.7%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고, 그 외에 여타 업종에 대한 투자는 약 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상태이다.

<표 2-8>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건, %, 천 달러)

업종중분류	신고 건수	비율	신고 금액	비율	투자 건수	비율	투자 금액	비율
합계	14,570	100.0	21,812,997	100.0	12,996	100.0	14,943,125	100.0
음식료품	1,046	7.2	946,218	4.3	928	7.1	701,668	4.7
석유의복	2,777	19.1	2,548,372	11.7	2,430	18.7	1,576,603	10.6
신발가죽	796	5.5	696,070	3.2	722	5.6	469,136	3.1
목재가구	531	3.6	233,762	1.1	436	3.4	124,288	0.8
종이인쇄	306	2.1	273,459	1.3	258	2.0	159,889	1.1
석유화학	1,325	9.1	2,237,768	10.3	1,162	8.9	1,631,413	10.9
비금속광물	486	3.3	1,099,990	5.0	405	3.1	845,231	5.7
1차금속	340	2.3	900,146	4.1	296	2.3	971,330	6.5
조립금속	698	4.8	931,589	4.3	614	4.7	556,687	3.7
기계장비	1,664	11.4	2,010,102	9.2	1,500	11.5	1,188,810	8.0
전자통신장비	1,945	13.3	5,729,071	26.3	1,824	14.0	3,977,417	26.6
수송기계	753	5.2	2,941,675	13.5	700	5.4	1,992,666	13.3
기타	1,903	13.1	1,264,775	5.8	1,721	13.2	747,987	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3. 한·중 FTA의 필요성

#### 1) 경제적 측면

##### 가. 산업구조 특징에 따른 상호 보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자국의 국익 확보에 활용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더욱 더 밀접한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양국의 경제부역 협력에 매우 커다란 상호보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래 생산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높아지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도 실업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높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인건비는 높은 반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과 기술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출했었지만 점차로 노동비용이 빠르게 높아지고 경쟁자들이 증가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의 한국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이 최근에 외서는 전자공업,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확대 이전되었으며, 이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켰다. 반면 중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의 해외 이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의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노동집약형 공업은 주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한국의 이러한 이전은 중국에 자본, 기술 및 선진화된 관리능력을 이전해 주어 중국 상품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나.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

한국은 국토가 좁고 게다가 경지면적 또한 적어 농산물이 풍부한 편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자원 역시 빈약하여 필요한 자원 등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자원자급률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료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가까운 곳에서 이것들은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뵈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얻는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듯 풍부한 자연자원과 값싼 인적 자원을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협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한·중 양국 간의 무역발전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소비수준은 높지만 인구가 적고 시장이 협소하다. 따라서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록 1인당 소비수준은 낮을지라도 인구가 많고, 이에 따른 무궁무진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데 따라 한국의 여러 상품들, 예컨대 철강제품, 가전제품, 섬유류, 전자상품 및 자동차 등은 모두 중국에서 방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 다. 기술의 상호 보완

한국은 현재 신흥공업국가로서 그 공업화 정도가 중국보다 높으며 미교적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견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몇몇 제조업, 예컨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업종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여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과학이 우세하여 몇몇 첨단과학, 예컨대 항공운수,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신소재등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선진수준에 따라 있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양국은 협력 체제구축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중국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따라서 중·일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FTA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마.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과 교역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를 통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들과 경제협력기구를 형성할 경우 그에 따른 경우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바.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접근의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사. FTA를 통한 경제성장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정치·외교적 측면

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이 최상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3국간의 이해 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그 실현이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선 한·중 FTA를 우선 실행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개선과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양국간 FTA가 매개체로 작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간 FTA 실현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교류협력 확대와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36억 개 국가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ASEAN) 국가 연합,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랑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중동의 GCC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SACU), 코스타리카와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인도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의 일환적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

립 등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중 FTA에 대한 전략적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면에서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의 국제 표준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적지 않는 사회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식 시장경제도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지출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및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비용에 의한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실행, 그리고 양국간의 경제관계 유대 강화 및 관리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측면에서 한국과의 FTA 조기 실현이 여타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타 FTA(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

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FTA가 가장 발효될 경우 나타날 무역전환 효과에 의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중국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중·일 관계의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인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FTA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일본보다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ram)와 같은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에 앞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농업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FTA 추진에 비해 일본과는 대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분야의 개방문제에 대해 당초보다 매우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과의 FTA 협상을 2004년에 결렬시킨 데 반해, 중국은 농산물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중국의 FTA 조기 체결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유보하고서라도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희망하는 중국의 정치외교 전략과 이해가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 III. 한·중 FTA에 대한 추진현황과 논의 경과

#### 1. 중국의 추진현황

#####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7개 있고 현재 협의중의 FTA는 7개 있으며 2개의 FTA에 대해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 아래 <표 3-1>에 따른 각각 제시하겠다.

중국 내륙·홍콩 및 중국 내륙·마카오 간에 체결된 CEPA<sup>8)</sup>는 2003년 6월 홍콩, 동년 10월 마카오와 각각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제1차로 총 273개의 품목(대부분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1월 1일 제2차로 273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제도의 원칙과 WTO자유무역을 만드는 규정에 의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국내륙과 홍콩, 마카오간의 경제 공동적인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

8) CER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中國內地與香港澳門分別于2003年6月29日2003年10月17日簽署了《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貿易關係的安排》《內地與澳門關於建立更緊密貿易關係的安排》。

<표 3-1> 중국의 FTA추진 현황

(2012년 10월 기준)

대상국가(지역)	추진상태	대상국가(지역)	추진상태
홍콩·마카오	협정 발효(2004.1)	GCC	협상 중
ASEAN	협정 발효 (2004.11)	호주	협상 중
파키스탄	협정 발효 (2006.10)	아이슬란드	협상 중
칠레	협정 발효 (2006.10)	SACU	협상 중
뉴질랜드	협정 발효 (2008.10)	스위스	협상 중
싱가포르	협정 발효 (2008.10)	한국	협상 중
페루	협정 발효(2009.4)	노르웨이	협정 중
코스타리카	협정 발효(2010.4)	한·중·일	공동 연구
대만	협정 발효(2010.5)	인도	공동 연구

자료: 중국자유무역 홈페이지 (<http://fta.mofcom.gov.cn/>)

중국·ASEAN FTA는 2004년 11월 중국과 ASEAN간에 관세인하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부터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 관세인하를 시작하는 한편 2010년까지는 관세철폐를 완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ASEAN 6개 선발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등과, 그리고 2015년까지는 4개 후발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단계적 관세철폐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중·ASEAN FTA 체결은 약 18억 명의 소비자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경제 블록권이 장차 탄생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해외투자·기업진출 대상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2005년 12월에 중·파키스탄 자유무

역협정조기시행 프로그램<sup>9)</sup>이 공식적으로 서명되었고 2006년 10월 1일 공식으로 발효하였다. 이로써 파키스탄은 중국이 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중·파키스탄 FTA에 따라 양국은 두 단계에 걸쳐 전체 상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로 5년 내에 각국의 총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중 36%의 품목의 경우 3년 이내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년 단계로 협정효력발생 이후 6년째부터 총 상품에서 90%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양국은 매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중요 무기공급처이기도 한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인 대만,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파키스탄 FTA 체결은 중국이 남아시아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칠레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우 2005년 11월에 중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서명되었고 2006년 10월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양국이 관세를 삭감한 주요 품목은 농산물, 화공제품, 방직의류, 전기설비제품 등이며 전체 관세품목의 97%에 대해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은 중·칠레 FTA를 통하여 자원(특히 광물과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서 주목하고 있는 남미와의 교역에서 주요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칠레는 중국기업들의 남미 투자 및 경영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서비스와 투자 부문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9) 중·파 자유무역협정조기시행 프로그램: 「Agreement on the early gravest program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of Pakistan」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10월 공식적으로 FTA협상을 개시하고 2008년 10월 1일 협정을 발효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서방국가 중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가지위를 인정하는 서방국가이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고 땅이 작지만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은 뉴질랜드와 관계를 강화하면 나중에 중국은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많은 도움은 업게 될 것이다.

중국과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6월 시작했으며 2008년9월 최종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국과 개별 아세안회원국과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싱가포르는 중국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국은 의료, 교류, 회계 등 서비스 무역 영역에서 WTO협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약속했다. 중국과 싱가포르간의 무역관계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3월 시작했으며 2009년 4월에 타결되었다. 양국이 관세를 삭감한 주요 품목은 전기설비제품, 항공제품, 자동차,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이며 전체 관세품목의 90%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이다. 중국은 중·칠레 FTA와 함께 중·페루 FTA를 통하여 자원(특히 광물과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서 주목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와의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양국이 지적 소유권,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 장벽 등 측면에서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투자까지 상호 이익을 추진하게 된다.

중·코스타리카는 2007년 6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할 당시부터 FTA 구축 논의를 시작하였고, FTA협상은 2008년 1월에 공식적으로 서명되었고, 2010년 4월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은 99.9% 제품에 대해, 코스타리카는 89%의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실행하기로 합니다.

중·대만은 2008년 대만 정관 교체 이후 빠른 관계 개선으로 중-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이 2010년 5월 29일 최종 타결되었다. 2010년 9월 12일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ECFA 협정 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 EHP가 2011년 1월부터 발행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GCC는 2004년 7월에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4번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이 ASEAN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연합체와 체결하는 FTA가 된다. 중국이 GCC 회원국가들과 자유무역관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석유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GCC 회원국들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간의 무역협정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호주 FTA협정은 2005년 4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12번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국은 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호주는 중국에 있어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금속광물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선진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발전하느라 노력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상에서도 호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

중국과 아이슬란드는 2008년 9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중국과 FTA협상하는 첫 번째 유럽 선진국인데 중·아이슬란드간의 무역규모는 아직 작지만 상호보완성이 높아서 무역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증해주는 첫 번째 유럽 선진국이며, 아이슬란드와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면 기타 유럽국가와 선진국에 대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SACU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의 경우 경제발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경제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중국이 이 지역의 넓은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스위스는 2010년 2월 4일에 자유무역협상이 시작되었는데 2012년 5월에 5번째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국과 스위스 간의 FTA가 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EU 국가와도 무관세 교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현재 공동연구 또는 협의중인 FTA 대상국은 한국, 노르웨이, 한·중·일, 인도 등이 있다.

## 2)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 동기

일반적으로 FTA 대상국가 선정 기준은 경제적 이익 및 비용, 정치·외교적 동기, 협상 전략적 동기 및 기타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및 지리적 인접성, 산업구조의 보완과 경쟁관계, 기술이전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데,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한 무역규범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외교적 동기에 위한 FTA는 지역안보, 외교적 필요성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스라엘 FTA와 미국·요르단 FT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중국이 ASEAN, 호주, 브라질, GCC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도 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동기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추진 중인 FTA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타 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을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1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분석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조만간 양국 간 FTA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FTA 로드맵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유관 정부기관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중국상무부정책연구실(中國商務政策研究室)의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FTA 로드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이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 대외경제관계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것이고 세계의 지역주의를 주도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왔다.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영역, 다 수준, 다 지점의 FTA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에 비추어 국가 지역별 FTA 추진의 이해득실과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질서 있게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10년) 동안 중점적으로 두 종류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FTA를 통해 전략적인 자원 에너지 공급 가지

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FTA를 통해 안정된 주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은 우선 ASEAN과의 FTA 가속화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주도의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조건을 쌓아 나가는 동시에 홍콩 마카오와의 CEPA를 심화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대만과 통신·통항·통상을 실현하고, 이어서 양안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0년 전후 NAFTA, EU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체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FTA를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지역 노후 공업지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구매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러시아, 호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중국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제발전의 탄력성과 국제시장 운신의 폭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대국과의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상을 발판으로 해서 이 국가들과 FTA를 적시에 추진하여, 개도국 블록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구미시장에 심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품과 특정 영역을 선택해 먼저 모종의 특수한 협정을 이루고 개별 영역에서 FTA를 추진하여, 이 시장들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방식과 경험을 점차 축적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가 다수의 개도국과 체결한 로메협정<sup>10)</sup> 모델을 벤치마킹 하여 빈곤 국 및 자원부국의 1차 상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

10) EC(유럽공동체) 9개국과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 46개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이상과 같은 중국의 FTA 로드맵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이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기대하는 동기는 에너지 자원 확보, 시장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의 주도권 경쟁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미국 26.9%, 일본 23.1%, 중국 2.1%에서 2007년에는 중국 20%, 일본 11.2%, 미국 11.1%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한·중간의 무역 관계는 FTA 없이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과 엄청난 잠재적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통합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에서 일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 3성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 소화하기에 용이한 기술 수준을 보유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나 이를 통한 기술 확산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정책을 첨단 설비 기술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자주적인 혁신능력 개발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 한국의 추진현황

###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03년부터 시작하여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을 취하였으며, 최근 들어 거대경제권, 자원부유국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4년 6월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FTA 추진과정 중 최대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금 한국 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무역자유화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7대에 달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의 FTA는 6개가 있으며 8개의 FTA에 대한 타당성이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첫 번째 FTA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로써 한국도 드디어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한·칠레 FTA는 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4여 년이 걸렸다.

<표 3-2> 한국의 FTA추진 현황

(2012년 10월 기준)

대상국가 (지역)	추진상태	대상국가(지역)	추진상태
칠레	협정 발효(2004.4)	GCC	협상 중
싱가포르	협정 발효(2006.3)	호주	협상 중
EFTA	협정 발효(2006.9)	뉴질랜드	협상 중
ASEAN	상품 협정 발효(2007.6)	중국	협상 중
ASEAN	서비스 협정 발효 (2009.5)	인도네시아	협상 중
ASEAN	투자 협정 발효(2009.9)	일본	공동 연구
미국	협정 발효(2012.3)	MERCOSUR	공동 연구
인도	협정 발효(2010.1)	한·중·일	공동 연구
EU	협정 발효(2011.7)	이스라엘	공동 연구
터키	협정 발효(2012.8)	베트남	공동 연구
페루	협정 발효(2011.8)	몽골	공동 연구
콜롬비아	서명 및 협상타결 (2012.8)	중미	공동연구
개나다	협상 중	말레이시아	공동연구
멕시코	협상 중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er/>)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는 칠레에 이어 한국이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한·EFTA FTA가 발효된 이후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산자로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기회를 맞게 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품협정은 2007년 6월 1일,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1일 그리고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1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아세안과의 FTA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한국 FTA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아세안이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한·ASEAN FTA는 그간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동북아·동남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위해 남아있는 서비스·투자협정의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아세안이 한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21세기의 든든한 동반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2006년 2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무대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한국이 서명한 한·미 FTA는 세계 무역자유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06년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협상개시가 발표되었는데, 20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가 정식 서명되었다. 2010년 1월 발효되었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국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투자, 서비스 분야 등을 망라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인도로서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즉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의미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예비협의 개최 합의가 2007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이후 2010년 10월 6일에 공식서명하였고,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경쟁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 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 협정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한·터키는 2012년 3월 2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터키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자무무역협정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되었다.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을 마쳤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24대 수출국으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주변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2010년 기준 한국과 페루의 교역규모는 19억 8000만 달러로 수출이 9억4000만 달러, 수입이 10억 4000만 달러로 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합성수지, 경유 등이며 수입 품목은 동광, 아연, 커피 등 원자재입니다

2012년 8월 31일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서 가서명된 자유무역협정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관과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012년 6월 25일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고, 8월 31일에 가서명을 마쳤다. 2011년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교역에서 수출 16억 1000만 달러, 수입 3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12억 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승용차·자동차 부품·합성수지 등을 콜롬비아는 커피·원유·합금철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한·캐나다의 경우 FTA 추진은 2004년 11월 APEC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2005년에 제1차 (1.18~21) 및 제2차 (3.31~4.1)에 걸쳐 사전협의를 개최되었는데 양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 한·캐나다 FTA 공청

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현재 1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멕시코 FTA의 경우 2004년 5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10월~2005년 8월까지 6차례 공동연구 모임을 갖고 공동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05년 9월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결하기로 합의되었다.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의 경우 2004년 11월 한·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MERCOSUR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되었다. 제1차 공동연구(2005.5 파라과이) 및 제2차 공동연구(2005.8 서울)결과를 발표되었으며,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되었다.

한·일 FTA의 경우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수준을 한국에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측 농수산물 분야 양허안은 무역액 기준 50~60%, 품목 수 기준은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전부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이 먼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현재의 냉각 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이 현재 공동연구 또는 협의중인 FTA 대상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GCC,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이런 추세에 따른 한국대외무역이 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2)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추진 동기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FTA 추진 동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으로

시장규모의 면에서 보면,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나 한반도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영토라는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되었다. 한편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1.8배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 면에서 중국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BRICs 4개국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과 금융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해외시장 접근기회의 확대 면에서 중국은 미국, 일본, EU 등과 함께 주요한 FTA 추진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에 따른 대중 수출 증대 혜택을 들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 인하를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국시장 의존도와 한·중 간 빈번한 통상마찰의 발생 정도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교해서 거래비용의 축소 면에서 한국에 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최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중요 시장을 확보해 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

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중국과의 FTA가 중요하게 된다. 중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과 대중화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중국을 교두보로하는 한 타 지역 진출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선진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력 제고와 기술이전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경쟁적인 부문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FTA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중 FTA 체결시 비교열위산업의 생산이 FTA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인력이 실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구조조정 비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일 3국의 FTA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서 레버리지

효과<sup>11)</sup>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FTA 대상국 평가기준에 비추어보면 중국은 FTA 대상국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3. 한·중 FTA 논의 경과

2002년 11월 중국 주룽지(朱鎔基) 전총리 재임 시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한·미 FTA 타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한·중 FTA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8월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있다고 표명하였다. 2006년 5월 방한한 보시라이(薄熙来) 중국 상무부장 역시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밝혔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양국의 구조조정과 협력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간 FTA에 관한 논의는 아래 <표3-3>와 같다. 2002년 중국은 한·중 FTA 검토를 제안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4년 11월에 ASEAN+3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산업별 영향, 민간 분야 도출 등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11월 연구가 종료되었다.

---

11)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효과라고도 한다.

<표 3-3> 한·중 FTA 논의 경과

연도	추진 내용
2002	중국, 한·중 FTA 공동연구 제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내에 TF팀 설치
2004.9	ASEAN+ 3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 공동연구개시 추진합의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 ·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공동연구 운영계획,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확정 제 2차 회의 시 6월중 국에서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하기로 합의
2007.7.3~4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상품분야 보고서 초안 논의
2007.7.3~4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한국)
2007.9.18~19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전문가 회 의(상하이)
2007.10.23~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6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창춘)
2012.1	한·중 정상회담 FTA협상에 합의
2012.5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품목별 분류하기 위한 1단계 모델리티 협상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http://www.Stats.gov.cn/> )

한국의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APEC 각료 회의 중 한·중 통상 장관 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

·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제 1차 회의(2007년 3월 22일~23일)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2년간의 양국 연구기관(KIEP, DRC) 간의 민간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한중 양국의 FTA 추진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되,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로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각료 회의에서 2007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간 FTA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것이라는 양측의 인식 아래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FTA 추진 경험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 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물품, 경쟁 등 포괄적인 FTA의 정책과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 증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중국측 민감 산업에 대한 FTA 영향 등을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한·중 양국은 제 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회의 의제는 상품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2차 회의(2007년 7월 3일~4일)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시 의결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상품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양국의 민감 분야인 한국측 농림 수산업, 중국측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농림 수산업은 공동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 과정을 가지고 필요 시 실무진과 중간 연구 과정을 거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중간의 산·관·학 공동 연구 작업은 양국의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농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분야의 보호 방호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산업계·학계 등과 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한중 양국의 FTA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 3차 회의(2007년 10월 23일~26일)가 중국에서 개최하고 제 4차 회의(2008년 2월18일~20일)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상품(제조업, 농림, 수산업) 및 여타 이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 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위생 및 검역 조치의 8개 소분야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분야는 7개 분야 18개 소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농림 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 등 3개 소분야를 제외한 15개 소분야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한·중 산·관·학 제 5차 회의(2008년 6월 11일~13일)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한중 양국은 FTA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경제·통상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민감 부분인 농림 수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과을 양측이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한·중 양국의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도 한국의 민삼 부문인 농림 수산업 부문과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적절한 보호방안을 양측은 계속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외교통상수에 의하면 향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업계, 학계와 더불어 폭넓은 여론 수렴과 협의를 하면서 한·중 양국 FTA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중 양국은 민간 공동연구, 2007년부터 2010년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약5년간 진행된 각종 공동연구에 이어 2011년 정부간 실무협의를 거친 한·중 양

국은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에 합의했다. 2012년5월 열린 양국통상장관 회담에서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세 차례 가졌다.

한·중 수교한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약 34배 급신장하는 등 양국은 서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고 한중 양국 모두 급성장하는 통상관계를 감안하여 불 때도 한·중 양국의 FTA 추진은 현재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한·중·일 FTA협상 개시

장관급 회담에서 영토와는 별도로 경제우선 원칙.

한·중·일3국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012년11월20일 개시된다. 한·중·일3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에서 20일 장관급 회담을 열고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3국은 한·중간의 독도 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과는 별도로 경제적 강화를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이 같은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둘러싸고 올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연내협상 개시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실무자 수준의 협의를 열고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가 진행돼 왔다.

## IV.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 1. 한·중 FTA의 이론적 기대 효과

FTA의 회원국, 역외국 및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거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 1) 긍정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설명될 수 있다.

##### 가. 정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양국의 무역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태적인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역내무역 변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지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모두 역외무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배타성과 관련되므로, 역외국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 무역창출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결국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로 인하여 생산측면에서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

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특혜적인 역내무역장벽의 제거는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로 비교우위를 가진 역외국의 특정제품이 있었다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기존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에는 역외 간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한다<sup>12)</sup>. 또한 몇 차례의 다자주의 무역협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역전환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중 FTA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보면 <그림 4-1> 과 <그림 4-2>의 같다.

A와 B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한다. A상품은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B상품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A상품을 충분히 생산하여, 한국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우선 <그림 4-1>을 참조하여 한·중 FTA 체결 전 중국은 A상품에 대해  $t_c$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t_k$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t_c < t_k$ 이다). 중국은 생산량이 충분히 많아 시장균형을 이루는데, 별도의 상품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OM만큼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중국 내 균형가격은  $T_c = P_w + t_c$ 이다. 반면, 한국시장 내 균형가격은  $T_k = P_w + t_k$ 이다 한국시장에서는  $T_k$  수준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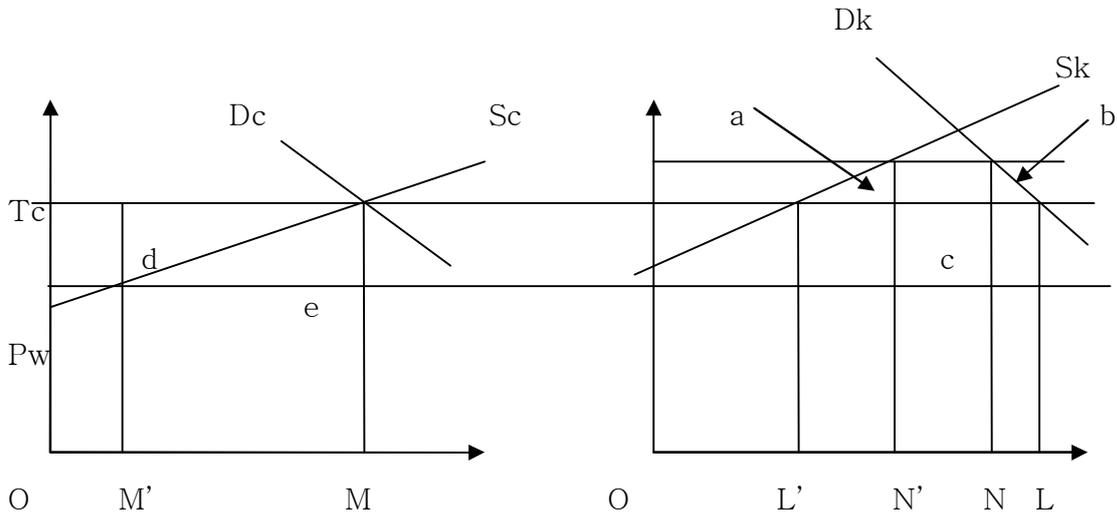
---

12)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47.

서 ON'만큼의 생산과 ON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소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한·중 FTA 체결 후,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시장에서는 TC의 가격에서 OL의 생산과 OL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LL의 과소공급량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LL'만큼을 수입하고, 중국은 수출 후 MM'만큼의 부족분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따라서 MM'=LL'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에서는 생산측면에서의 무역창출효과(a), 소비측면에서의 무역창출효과(b), 무역전환효과(c)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별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용 없이, (b+c)만큼의 관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1>한·중 FTA 체결한 이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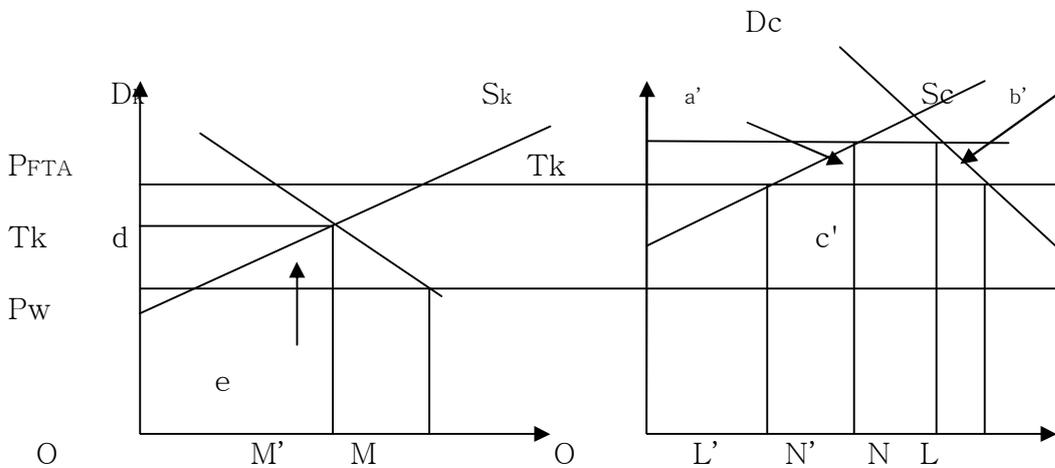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그림 4-2>을 참조하여 B상품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산량이 많아, 중국시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한·중 FTA 체결 전, 한국시장 내 균형생산은 ON', 소비는 ON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중국시장 내 균형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NN'만큼의 수입이 필요하다. 한·중 FTA 체결 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B 상품을 세계시

장과 비교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부족량의 전부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이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요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한국 내 가격이  $P_{FTA}$ 까지 올라간다.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OM의 전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의 요구수요량인  $OM'$ 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생산의 무역창출효과는( $a'$ ), 소비의 무역창출효과는( $b'$ ), 무역전환효과는( $c'$ )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 $d'+e'$ )만큼의 관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2>한·중 FTA 체결한 이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나. 동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생산요소의 재배치 등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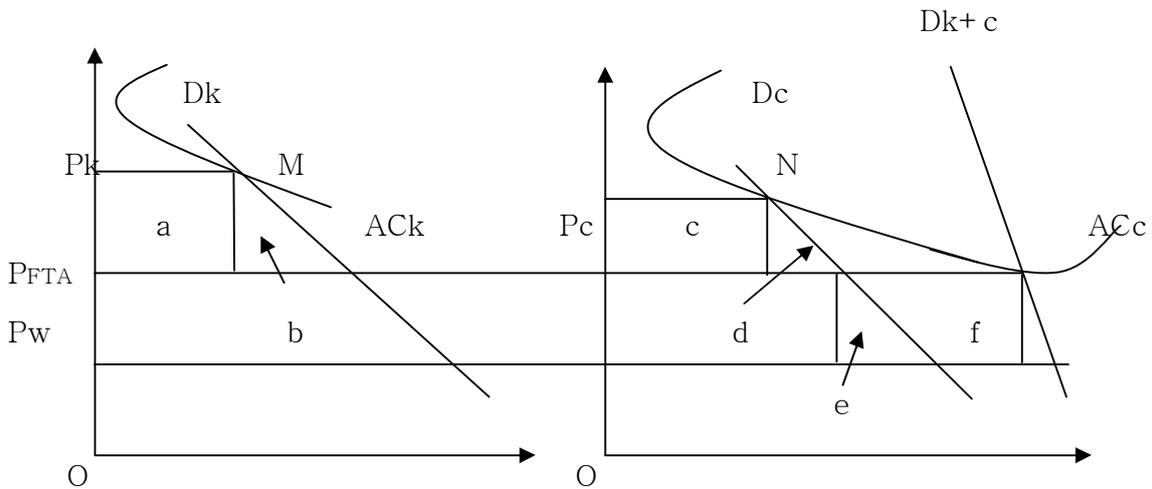
### (1) 규모의 경제 달성

우선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생산 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협정이전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역외 국의 상품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역내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그림 4-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D_k$ 와  $D_c$ 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수요곡선이다.  $D_k+c$ 는 총수요곡선을 의미한다.  $AC_k$  와  $AC_c$ 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평균비용곡선이다. 한·중 FTA 체결 전, 한국에서는  $P_wP_k$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는  $P_wP_c$ 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과 중국의 생산점은 각각  $M$ 과  $N$ 이다.

한·중 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에서 시장전체를 점유하고, 생산량을 늘린다. 따라서 평균생산비용이 낮아져, PFTA의 가격으로 무역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는 필요로 하는 양만큼을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가함을 기대할 수 있다. 생산측면에서  $a$ 만큼의 사회후생과 소비측면에서  $b$ 만큼의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중국에서는 규모의 경제의 효과로  $(c+d+e+f)$ 만큼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c+d)$ 는 소비측면에서의 후생증가,  $(e+f)$ 는 생산측면에서 사회후생이 증가함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시장이 한국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더 큰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3>한·중 FTA의 규모의 경제 효과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2) 경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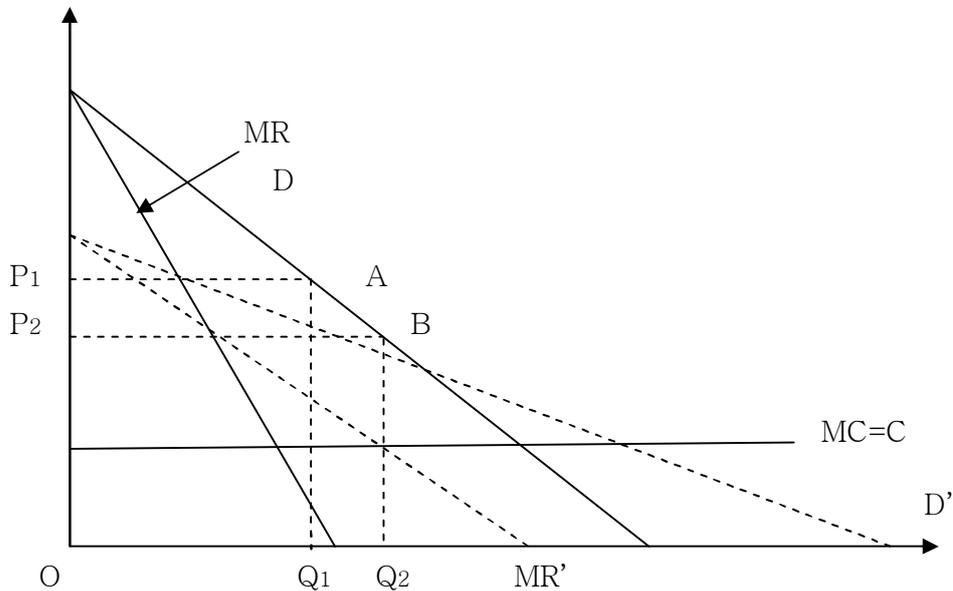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당사국들은 역내의 외국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촉진된다. 기업의 경쟁은 상품의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효율성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 완화와 맞물려 더욱 극대화된다.

한편, <그림 4-4>을 참조하여 한·중 FTA 체결 전, 중국내 존재하는 과점기업이 N개라고 가정한다. 기업마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N\eta$ 라고 생각하고 D는 수요곡선이고, MR은 한계수입곡선을 나타낸다. MC는 한계비용곡선이며,  $MR=MC$ 인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균형점은 A, 균형가격은  $P_1$ , 균형수요량은  $Q_1$ 으로 나타난다

한·중 FTA 체결 후, 외국기업 등의 시장 진출과 경쟁 촉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수요곡선은  $D'$ 으로 나타난다.  $MR=MC$ 에 따라 균형점은 B, 균형가격은  $P_2$ , 균형수요량은  $Q_2$ 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한·

중 FTA 체결은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sup>13)</sup>.

<그림 4-4>한·중 FTA의 경쟁 촉진 효과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3) 역내 투자의 증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 투자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협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세 혜택이나 원산지규정 등으로 단일 투자협정 이상의 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주요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에 있어서도 운송비 등을 줄이고 무관세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의도가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확대된 역내 시장에서 많은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 특히 역외

13) 曹春蘭, 「全球化背景下中韓自由貿易區的經濟效應分析」, 中國海洋大學, 2011pp.31~42.

국의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형성된 역내 시장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가 나타난다. 협정 이전부터 역내 각국에서 생산을 하였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축소로 기준의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비교우위를 찾아 생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sup>14)</sup>.

## 2) 부정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 국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경제 전체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즉,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은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된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

14)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9, pp. 94~96.

과정에서 취약사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단기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협정의 이해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간이나 유보사항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sup>15)</sup>.

### 3) 기타 효과

소수 국가간 FTA의 체결은 관련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 외에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장치·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FTA를 통해 대외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TA회원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도출에도 도움이 된다.

FTA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는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sup>17)</sup>. 한국 같은 경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FTA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와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15)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24.

16)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의식을 고양 시켜 1997년 7월 6일 총선에서 멕시코제도혁명당(PRI)의 69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입지확보에 공헌한바 있다.

17)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사, 2008, pp. 51.

## 2.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

한·중 FTA는 경제적 용인 외에도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한·중 FTA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본 절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만 제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양허계획에서 평균수입관세율을 2010년까지 9.8%로, 이중 농산물은 15%로, 공산품은 8.9%로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WTO의 정부기술협정(ITA<sup>18</sup>)에 참가하여 256개 ITA 대상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고, 대부분의 화학품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최종 양허세율을 化学调和(Cheical Harmonization)<sup>19</sup>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 관세율의 경우 2006년 7월까지 완성차 관세율은 25%로, 자동차부품의 평균 관세율은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동안 높은 관세장벽과 통상제도의 관행을 위했던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통상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1997년 평균실효관세율은 23%였으나, 2001년 3,46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관세율을 15.3%로 낮추었다.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5,332개 품목과 3,0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2003년 현재 전 산업 평균관세율을 거의 달성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

18) ITA란 (컴퓨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해 이런 정보기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교역을 완전 무관세화 하는 정보기술협정이다.

19) 化学调和는 화학품 및 화학제품(HS 28~39류)에 관한 관세인하(최종적인 인하율은 0~6.5%)에 대하여 미·일·EU 등이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교섭의 일환으로서 합의.

20) 중국 정부가 수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일명 증치세)는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은 2004년 1월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평균 15%에서 12%로 하향조정하였다.

<표 4-1> WTO 가입 양허스케줄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 약속

품목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 완화 계획 개요
관 세 인 하	전품목	양허품목: 총7,151개 품목 관세인하(2001년)15.3%→ (2010년)9.8%
	공산품	양허품목: 총76,174개 품목 관세인하(2001년)12.7%→ (2010년)8.9%
	농산품	양허품목: 총977개 품목 관세인하(2001년)19.3%→ (2010년)15.0%
	IT제품	정보기술협정(ITA)가입 256개 IT관련 제품에 대해 2005년까지 무관세화 추진
	화학품	화학제품(HS 28~29)에 대해 化学调和의 수준으로 인하 화학 제품 관세수준을 0%, 5.5%, 6.5% 수준으로 통일
	자동차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비관세조치완화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 조치를 2005년까지 점점 철폐 및 신규 도입 금지 수입쿼터를 매년 15%씩 증액 또는 중량 경과기간 중 수입쿼터, 수입허가 운용 절차 간소화·투명화 추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加入WTO談判協定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시 합의했던 관세율을 기준으로 중국의 2006년 관세율을 계산하면 <표 4-2>과 같다<sup>21)</sup>. 최근 중국은 광공업에 대해 평균 1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별 편차가 큰 편이다. 피혁, 의류, 자동차, 기타 제조업 등의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5%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나 목재,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5%대의 낮은 관세율 적용대상이다.

21) 이 작업은 정인교(2001a)에서 실시했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추정했음을 밝힌다.

<표 4-2>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평균관세율

산업분류	중국 수입관세율(1)		한국의 수입관세율(2)	
	GTAP 관세율(1997)	2003년 평균관세율	GTAP 관세율(1997)	참고사항
곡물류	1.5	4.1(2)	236.0	7.2(4)
축산물	13.5	12.5	17.8	소폭인하
채소과일류	19.7	17.1	132.1	소폭인하
기차농산물	3.6	8.5	134.9	소폭인하
가공식품	23.8	13.3	49.4	
설탕	3.7	20.0(3)	5.3	
임산물	4.5	1.7	3.8	
수산물	16.4	12.8	14.7	
광물	3.1	4.4	3.3	소폭인하
석유류	4.9	3.0	6.7	
섬유	21.7	7.5	9.5	
의류	23.9	16.1	8.0	
피혁제품	12.5	17.5	7.3	
목재가구	12.6	5.2	5.6	
종이· 금속제품	11.1	5.4	5.3	
석유화학	13.2	9.2	7.5	
철강, 금속제품	5.4	8.3	5.5	철강 무세화
비철금속	12.8	12.4	5.6	
차량 및 부품	26.7	14.7	7.7	
기타 수송장비	6.7	8.2	5.5	
전기전자	7.7	9.0	8.0	소폭인하
기계장비	11.6	10.0	8.0	
기타 제조업	18.3	16.4	7.8	

주: (1)단순평균관세율 (2)2002년 기준세율

(3)1701류 6개 전 품목(HS8단위)이 TRQ 대상품목이며, 기준연도는 2002년

(4)1002~1104류 중 TRQ 대상 35개 품목의 쿼터 내 관세율 평균

자료: 무역협회 (2011)

한편 WTO 가입협상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에 의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9년 평균 22%에서 2004년 17%로 대폭 낮추었으나, 10개 농업품목(HS 8 단위로 5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TRQ<sup>22)</sup>)를 허용하였다<sup>23)</sup>. 해당 품목은 밀, 옥수수, 쌀, 유지종자류, 설탕, 양모, 면화 등이다. 설탕을 제외한 곡물류, 양모, 면화의 쿼터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50~71%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GTAP<sup>24)</sup> 데이터베이스에서 1997년 중국의 곡물류 수입관세율이 1.5%로 낮은 것은 당시 중국은 곡물류 순수출국이었고, 곡물류 수입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로 실효관세율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RQ 품목에서 설탕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다른 TRQ 품목에 비해 TRQ 관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세율도 일부 인하되어 1998년 고무, 원모, 팜유 등 기초원자재 182개 품목(HS 10단위)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였고, 2000년 가공식품 7개 품목, 반도체부품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8%에서 3%로 인하하였다. 2006년 한국은 63개 품목에 대해 TRQ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국보다 광범위하게 TRQ 품목을 설치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은 아직 WTO에 양허되어 있어 않으며, 농산물분야 양허율은 97.59%이다.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양허율은 91.35%이고, 수산물의 경우 양허율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

22) TRQ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3) 이 작업은 정인교(2001a)에서 실시했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추정했음을 밝힌다.

24)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한국은 199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산업별 평균관세율을 변경시킬 만큼 인하 폭이 크지는 않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EU협상<sup>25)</sup>이 진행 중이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관세인하조치를 취하였고, 1997년 이전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UR에서 합의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8% 중심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실효세율과 단순평균 세율간의 차이가 크지도 않다. 다만 농산물에 있어서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TRQ 품목으로 인해 계산방식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GTAP에서는 곡물류에 대한 실효세율을 236%로 계산하고 있으나, 쿼터내 세율은 7.2%로 낮다. 채소과채류와 기타 농산물(사탕수수, 사탕무우, 양모, 식물성 섬유, 유지종자류 등)에 대한 실효세율은 100%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방콕협정<sup>26)</sup> 체결국으로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되는 품목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혜 폭이 평균 30%로 낮기 때문이다<sup>27)</sup>.

## 2)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결과<sup>28)</sup>

### 가. 한·중 FTA의 시나리오분석

다양한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분석 시나리오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분야는 제조업 보다 교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 많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근거한 가격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

25)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26) 1975년 5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 회원국으로 결성됨.

27) 방콕협정에서 한국은 256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평균 30%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7개는 일반양허품목이고, 29개는 최빈국특별양허대상품목이다. 회원국총량양허품목 수는 총 1,748개이다. 2002년 5월 이후 실시된 방콕협정 제3차 라운드에서 대상품목이 확대되었으나, 총 품목대비 대상품목의 비중은 10% 정도로 낮은 편이다.

28)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김영한(2009), 정인교(2008,2009)등의 논문을 들 수 있음.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9. 정인교,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조업에 비해 덜한 편이다. 농산물의 경우, 일부 교역은 국영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검역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도 많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농업분야가 FTA추진에 가장 민감하고, 농업계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극히 민감한 농업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모두 곡물류에 대해서는 TRQ를 부여하고, 킬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워낙 차이가 나므로 어느 관세율을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도 용이하지 않다. TRQ하의 자유관세를 가정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축소될 수 있는 반면, 킬터의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사실상 수입저지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율관세는 농업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GTAP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협상에서 타결될 개방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추정치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개방을 중심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자 한다. 비록 중국과의 FTA체결 시 농업개방이 민감하더라도 농업이 완전 배제되거나, 완전 개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을 포함한 기초산업을 개방하되, 일부만이 개방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자 한다. 즉, 기초산업 개방의 범위를 25%(시나리오1), 50%(시나리오2) 및 75%(시나리오3)로 가정하기로 한다<sup>29)</sup>. 이 경우, 중국측도 제조업 분야의 예외를 요구할 것이다. 철강과 더불어 자동차는 중국이 주력 제조업으로의 육성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중국이 관세철폐 예외를 주장했던 산업이다. 양국 제조업의 생산 및 교역 구조로 볼 때, 수송장비(특히 자동차)가 중국에게는 민감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송장비에 대한 관세가 각 시나리오에서 25%, 50% 및 75% 인하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기초산업 및 수송장비 외 나머지 산업은 3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완전개방을 가정한다.

---

29) 정인교, 「한국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2009, P. 12.

FTA 체결당사국들은 역내 관세의 완전철폐를 그 목표로 취하지만, 자국 내 상대적인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관세 철폐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설정한다. 우리가 설정한 각 시나리오별 추정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관세의 완전 철폐 시 예상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한국의 GDP는 2.52%p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우는 0.78%p 추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그 이후의 파급효과로 일부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업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로 농업 산업 내에서 생산이 11.60~12.04%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수송 장비, 전기 전자, 기계장비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반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가공식품, 설탕,차량 및 부품,철강, 석유화학 등이 될 전망이다. <표4-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축산물의 생산규모가 10.06~11.2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 분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경작지가 휴유지로 되고 이에 휴유지를 목축용으로 전환시켜서 보다 많은 목축지가 생겨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피혁, 기타 수송장비가 한국과의 FTA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술적 우위에서 오늘 결과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업종이다.

한·중 FTA로 예상되는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60~67억 달러 증가하고,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152~156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나 대 세계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한국이 기타 비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대체함으로써 중국 이외의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농산물(특히 곡물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FTA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 관세의 완전철폐에 따른 영향

	산업별 생산				한·중 교역량			
	한국		중국		대중수출		대한수출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곡물류	-12.04	-11.60	6.26	7.01	10	9	7927	7969
축산물	10.06	11.20	-0.22	0.47	8	8	23	31
채소과일류	-0.01	0.23	0.39	0.86	1	1	288	289
기타농산물	7.60	8.35	-0.51	0.38	1	1	1916	1910
가공식품	29.07	30.50	0.00	0.97	181	182	1442	1472
설탕	19.79	21.47	-3.46	-3.4	10	10	0	0
임산물	0.53	2.13	-1.18	0.1	0	0	1	1
수산물	1.46	2.09	0.56	0.89	9	9	95	98
광물	-2.43	-1.81	-1.06	-0.19	0	0	114	127
석유류	0.05	2.08	-0.66	0.64	160	189	82	93
섬유	-0.27	1.32	-2.50	-0.72	659	731	388	448
의류	-6.36	-4.75	5.18	7.19	-23	-15	411	413
피혁제품	-7.65	-6.22	5.85	7.23	-107	-56	177	173
목재가구	-3.08	-1.07	2.37	4.12	10	13	74	75
종이, 인쇄출판	0.37	2.19	-1.68	0.01	49	53	9	12
석유화학	1.77	3.85	-0.38	1.29	1280	1503	275	279
철강, 금속제품	2.32	4.91	-2.62	-0.56	939	919	73	173
비철금속	-1.87	0.43	0.05	1.74	80	91	149	152
차량 및 부품	3.28	5.82	-2.29	-0.02	295	284	31	37
기타수송장비	-9.88	-7.09	6.31	8.75	6	7	34	35
전기전자	-5.44	-3.61	-3.01	-0.72	1232	1370	679	679
기계장비	-3.89	-1.18	-2.08	-0.05	1079	1157	857	997
기타제조업	-1.47	0.31	1.77	4.08	180	188	152	159
총계					6050	6660	15202	15622

자료: 남영숙 등,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 113.

나. GDP에 대한 영향

<표 4-4>은 한·중 FTA가 중국과 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표이다. 양국간 FTA체결 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GDP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완전경쟁모형보다는 규모·자본축적모형이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완전경쟁모형을 이용한 시 플레이션에서는 한국의 GDP가 0.55~1.62% 포인트 추가성장이 예상되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GDP증가율이 2.24~3.29%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로 자본축적으로 인한 동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한국과 중국의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완전경쟁			규모 자본축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한국	0.55	0.99	1.62	2.24	2.66	3.29
중국	0.27	0.25	0.21	1.50	1.43	1.32

자료: 정인교,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2009, P. 123.

한편, 중국의 GDP개선 폭은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모형은 3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중국의 GDP가 1.32~1.50%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된 것은 중국의 총 교역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비중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9.97%였으나, 2000년에는 10.7%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총수출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은 1997년 3.25%에서 2000년 4.5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표 4-4>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농업분야 시장개방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GDP증가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개방이 확대되면, 중국의 경우 농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나 농업은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개방이 확대될수록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

#### 다.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전반적으로 볼 때,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생산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산업의 경우, 시나리오 1하에서는 관세의 25%만이 자유화됨으로써 산업별 생산규모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화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3 (75% 자유화)에서는 생산규모가 1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산업은 농업, 수산업, 임업을 포함하고 있어, 품목별 영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이용한 추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 내에서도 품목별 영향이 상당수준 다를 수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경우, 제3국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과일채소의 경우, 영향이 클 수 있다. 한편, 중국산 곡물의 무관세화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가공식품, 축산업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곡물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시간을 두고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이들 재배치된 산업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4-5>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단위: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기초산업	-1.87	-5.21	-12.47
가공식품	0.30	4.33	12.37
광물자원	0.43	0.18	-0.49
섬의류	32.87	34.88	37.35
화학	9.86	9.99	9.91
금속철강	3.63	3.05	1.78
수송장비	-4.69	-4.36	-3.78
전기전자	7.08	6.28	4.58
기계류	3.89	3.09	1.57
기타제조업	5.11	5.47	5.90
서비스	-2.55	-2.26	-1.57

자료: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2009, P.125.

중국의 경우, 다수 산업이 한국과의 FTA로 생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 비해 생산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산업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은 전기·전자가 될 전망이다. 증가율은 3~4%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금속철강, 기계류, 기타제조업 등은 기초산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작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등 기초산업 생산증가를 위해 제조업에 고용되었던 자원이 기초산업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이다.<sup>30)</sup>

30) 정인교, 「한국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2009, P. 126.

<표 4-6> 중국의 산업의 대한 영향

(단위: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오리3
기초산업	0.55	1.11	2.04
가공식품	0.65	0.42	0.02
광물자원	0.26	0.26	0.26
섬의류	0.22	0.05	0.22
화학	0.39	0.39	0.39
금속철강	0.13	0.09	0.02
수송장비	0.40	0.01	0.69
전기전자	3.37	3.47	3.63
기계류	0.35	0.30	0.21
기타제조업	0.29	0.22	0.11
서비스	0.04	0.01	0.36

자료: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2009, P. 126.

화학공과 섬유류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수송장비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는 배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송장비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비해 고관세를 부과하므로 한국의 생산은 확대되고 중국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라. 한·중 품목별 교역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FTA체결 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26~33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76~93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240~250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치는 정인교에 제시되었던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FTA체결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55~65억 달러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중국 수입은 58~142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7>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완전경쟁모형)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대중국 수출	32,620	32,945	33,319
대중국 수입	7,583	8,481	9,279
대중국 무역수지	25,037	24,464	24,041

자료: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2009, P. 127.

예상하는 바와 같이, 농업개방 여부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곡물류에 대한 관세철폐가 철폐되는 시나리오3하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최고 7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농산물, 가공식품도 상당 규모의 대 한국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축적 가정하의 시나리오 3에서 농산물 수출은 무려 103억 달러로 대 한국 총 수출증가 예상 액 142억 달러의 73%가 농산물 수출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한·중 FTA가 추진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농업의 전면개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대 한국 수출은 대체로 원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중FTA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대국에게 긴밀한 교역대상국이므로 보다 수준 높은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한·중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농업개방문제는 한·중 FTA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 제조업종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보다는 한국 생산자원이 대중국 수출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근무할 생산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추진 전에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대

량 실업이라는 사태를 고려하여 FTA체결 이전에 FTA체결의 여파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V. 한·중 FTA 분야별 추진 방안

### 1. 상품분야

한·중 FTA의 추진방안은 양국간 합의 가능한 세부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한·중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상의 유사성을 토대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 추진한다면 FTA로 인하여 무역전환효과는 크게 제한적이 될 것이다. 반면에 한·중 FTA협상의 차이점만 부각시킨다면 협정 내용이 너무 느슨해져 FTA라기보다는 경제협력 차원의 논의로 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FTA는 현실적으로 양국간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성 없는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러한 FTA 추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협상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내 합의 및 관련국간 협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중 FTA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외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중 FTA의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FTA협상에 참여하는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기본적인 입장조차도 상대국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함으로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은 협상의 결과를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한·중 양국이 기존에 추진한 FTA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기준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 쟁점 이슈를 추출하고 한국의 협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31)</sup>

####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한·중 양국은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제조업에서의 유사성 전기·전자·기계의

---

31)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4, <http://www.kiep.go.kr>.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금소제품, 화학제품, 식음료·담배의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수송기계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국의 섬유·가죽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한·중 양국의 무역구조를 비교해보면, 농업은 한국(1.3%)이 중국(1.8%)에 비해 낮으며 광업은 한국(12.2%)이 중국(6.8%)보다 높아서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쌀의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총수입의 20.5% 수준이다. 전기·전자·기계 부문에서의 무역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수송기계부문의 수출비중이 수출21.3%로 중국(4.0%)보다 매우 높다.

한편 한·중 양국의 관세율구조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농축수산업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의 관세율도 무세율 수준인 중국과 다르게 4.33%로서 다소 높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식음료·담배, 섬유·가죽, 고무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중국은 쌀 이외에는 농축수산업의 관세율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지 않으며 제조업부문 중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부문 외에도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부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의 FTA 상품 양허안에 대한 기준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양국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농림수산물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관세양허 스케줄의 비중으로 볼 때 농림수산물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관세율 구간별 분석결과를 보면, 관세율이 낮을수록 관세철폐시기가 짧다. 한국·중국 모두 5% 이하의 저율관세 품목의 경우 즉시철폐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아지며, 나머지 철폐군에 포함되는 비율은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종가세인 품목인 경우에는 관세철폐시기가 늦어지고 예외품목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비종가세 품목이 즉시철폐군에 포함되는 비

중이 크게 낮은 반면, 중기철폐군·장기철폐군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예외 품목군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개도국과의 FTA일수록 관세를 장기에 철폐하거나 양허 스케줄상에 예외로 분류하는 품목 비중이 높다.

##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이상과 같이 한·중 양국의 산업·무역·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고 기존에 FTA를 추진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향후 동북아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 및 협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예: 농림·축수산물)과 비종가세인 경우에는 관세철폐시기를 가급적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보다는 중국이 관세율의 크기에 민감하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종류가 비종가세인 농축수산물에 대해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추진 시 고관세율 품목, 비종가세 품목, 농산물의 관세인하 폭과 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인 기존에 맺은 FTA의 양허 카테고리별 산업별 및 품목별로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산업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문별·세율구조별 협상카드를 미리 읽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 모두 건설, 전기·전자·기계, 식음료·담배, 금속제품의 영향력계수가 크다. 양국은 건설, 전기·전자·기계, 식음료·담배, 금속제품 분야에서 가급적 개방을 늦추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화학제품, 섬유·가죽 등의 분야에서도 관세철폐의 단계설정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중 간 협상전략의 차이는 각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은 중국의 견해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2. 서비스분야

###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한·중 양국이 체결한 서비스 협정의 유보품목을 근거로 한·중 양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ositive list<sup>32)</sup> 방식으로 체결한 중국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UNCPC code 5단위로 분류된 675개의 아이টে임을 기준으로 negative list<sup>33)</sup>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양국은 서비스분야의 유보품목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표 5-1>은 양국은 서비스분야의 상대국에 대한 유보품목의수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대해 유보품목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ASEAN 국가들에는 약 80%의 서비스 품목에 있어서의 유보품목이 있으며, ASEAN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평균 84%의 유보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ASEAN 국가들보다 낮은 59% 정도의 유보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5-1> 한·중 양국의 서비스 분야 유보품목 수와 비중

구분	한·싱 FTA		한·미 FTA	중·뉴질랜드 FTA		중·ASEAN FTA	
	한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	뉴질랜드	중국	ASEAN (평균)
유보 비중	26.7	3	36.44	59	46	80	84
유보 품목 수	180	20	249	369	313	541	572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32) 무역자유화·자본자유화 및 특혜관세 제도 등에 관해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는 외국에서 수량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게재한 것이며, 자본자유화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외국자본이 자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을 표시한 것이다. 또 특혜관세 제도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33)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한·중 양국의 서비스 분야 FTA 양허안을 UNCP code 2단위로 분류해서 비교 분석할 경우 우선,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서비스 분야를 완전 개방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큰 영향을 없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 완전 개방하고 있는 건설서비스(UNCP code 51계열), 호텔 및 음식 서비스(UNCP code 64계열), 부동산 서비스(UNCP code 82계열),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UNCP code 94계열)에서 상당한 유보품목을 두었다. 특히 건설서비스(UNCP code 51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45개의 유보품목을 두었다.

한국이 법률, 회계, 감사, 부기 및 세무 관련 서비스(UNCP code 86계열)에서 29개의 유보품목을 둔 반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유보품목을 두었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기타 서비스(UNCP code 91계열)에서 32개 품목을 유보한 데 반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거의 완전히 개방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과 중국이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UNCP code 96계열)에서 상당량의 유보품목을 두며 한·중 양국에서 나타난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 분석의 특징이다.

##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한·중 양국의 서비스분야는 각국의 서비스산업 수준의 차이로 개방과 유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앞에서 양국간 양허안 비교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양국이 현재 취한 양허품목 등은 한·중 FTA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완전 개방하였으나 한국이 개방을 기피하는 건설서비스(UNCP code 51계열)와 한국은 완전히 개방하였으나 중국은 많은 유보품목을 둔 금융중계 및 보조 서비스(UNCP

code 81계열)는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매우 낮은 유보품목으로 두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유보품목을 가진 법률, 회계, 감사, 부기 및 세무 관련 서비스(UNCPC code 86계열), 호텔 및 음식 서비스 (UNCPC code 64계열), 부동산 서비스(UNCPC code 82계열),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UNCPC code 94계열) 등은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서비스분야 FTA 협상에 있어서는 우선 한·중 모두 협정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하고, 특히 MFN<sup>34)</sup>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시장제한조치 배제, 미래자유화 조항 등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한·중 FTA가 FTA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DDA<sup>35)</sup>보다는 진전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현재 타결한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도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한·중 FTA 서비스분야가 체결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FTA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분야 FTA 협상에서 한국에게 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상대국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금융분야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방되었고,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에 대해 이 분야의 개방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에서는 개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보품목을 둔 건설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 같이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에서 현재 유보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보가 해제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의 스케줄에 맞추어 중국에게 개방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

34)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35)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는 양허안의 체결방법도 중요한 사항이다. 한·중 FTA가 보다 높은 수준의 FTA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체결한 방식대로 negative list 방식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 ASEAN 국가들 모두가 positive list 방식으로 양허안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양허품목도 많아 시장개방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한·중 FTA가 체결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한·중 양국이 각각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행태를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서비스산업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서비스시장 개방을 쉽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현재 이루어지는 양극화된 FTA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 3. 원산지규정

#### 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협정 체결국 내로 한정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은 FTA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체결국간의 원활한 교역이 제한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은 흔히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체결한 FTA/EPA에서 양국의 원산지규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심지어 일국 내에서도 동일한 품목에 상이한 결정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는 협정 체결국간의 서로 상이한 입장이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결과로, 상대국의 산업구조나 교역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입장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 NAFTA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많이 반영된 모습을 보였으나, 한·EFTA FTA에서는 EU 방식이, 그리고

한·ASEAN FTA에서는 AFTA 방식에 세번변경기준<sup>36)</sup>이 가미된 독특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고, 한·미 FTA에서는 다시 NAFTA방식이 주로 인용되었다. 중국은 ASEAN이나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원산지규정은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요구하는 뉴질랜드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싱가포르 양국이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파키스탄, 중·ASEAN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면서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기준의 사용비중이 69.75%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한·중 양국간 원산지규정에서의 다양성과 차이점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한·중 양국간에 FTA가 전개될 때 이처럼 이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한·중 FTA 원산지규정이 간단하고 단순하며, 품목별로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산지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공통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ASEAN이 유일하며, 따라서 한·중 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한·중 FTA에서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의 모습을 고려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

---

36)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번의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한 내용은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양국의 원산지규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각 원산지규정의 결정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보여준다.

<표 5-2> ASEAN과의 FTA에서 한·중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한·ASEAN	중·ASEAN
CC	3	2
CC or RVC	243	
CC+ RM	2	
CC+ RM or RVC+ RM	11	
CC+ RM+ TECH or RVC	64	
CC + RVC	2	
CC+ TECH or RVC	227	
CH	9	40
CH or RVC	4,014	
CH or TECH or RVC	21	
CH+ ECTC	2	
CH+ ECTC or RVC	20	
CH+ RM	1	
CH+ RM or RVC	3	
CH+ RM or RVC+ RM	13	
CH+ RVC	4	
CS or RVC	61	
RM		6
RVC	61	4,752
RVC+ RM	5	
TECH		424
WO	458	
총합계	5,224	5,224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ASEAN FTA, 중·ASEAN FTA에서 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고려한 한·중 FTA 원산지규정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전 품목에 적용하면서, 섬유·의류 제품(HS 50~63류)에는 특정기준이 명시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여겨진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며, 중국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40% 부가가치기준만이 중·ASEAN FTA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중국도 본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한·중 FTA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품목별로 다소 다른 공정이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한·ASEAN 및 중·ASEAN FTA/EPA에서 모두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으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대안적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양국 모두 특정공정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SEAN과 FTA를 통해 나타난 원산지규정 방식이 한·중 양국 FTA에 기초가 될 경우, 이는 기존의 NAFTA 혹은 EU 방식에 비해 몇 가지 비교우위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가가치기준이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고려되지만, 부가가치기준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을 최소화하여 선택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너산지규정을 단순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원산지결정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ASEAN+3나 ASEAN+6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는 가운데 ASEAN과의 FTA를 통해 나온 원산지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한·중 FTA에 도입될 경우, 향후에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원산지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이 ASEAN+1에서 나타난 원산지규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ASEAN+3를 포괄하는 새로운 FTA의 협상이 아닌 기존 FTA 협정을 보완·수정하여 ASEAN+3의 효과를 향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원산지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되더라도 형식의 간소화와 이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가장 큰 목표는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되 기업에는 최소한의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이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의 기관증명 방식보다는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나 동일한 품목의 반복 수출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 간소화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제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규정을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화의 규칙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의 FTA협상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2011년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관세당사국이 집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과 중국이 집계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억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당해 연도 한국의 대중국 총 수출액 29%에 달한다.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양국이 통계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상대국 세관 혹은 관세당국과 그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며,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은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기까지 양국 세관 당국간의 교류와 협

력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중 FTA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 실제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의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윤활유가 될 것이다.

#### 4. 무역구제분야

##### 1) 한·중 FTA 무역구제의 예상쟁점

한국은 현재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FTA 협상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중국의 동북 3성과 산둥성의 기후, 지리적 위치 및 농업생산방식이 한국과 유사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한국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농업분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13억 세계최대 인구대국으로서 FTA 협상이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인력이동 양허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 인구밀도로 인하여 인력이동 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인력이동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아직까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중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국 반덤핑 제소는 50건이었다. 그리고 1996년 마늘분쟁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세계 무역구제 조치의 주요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 반덤핑제소의 주된 대상국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부분에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1). 반덤핑의 쟁점

### 가. 중국의 반덤핑법제(法制)의 복잡성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WTO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1997년 제정<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도 국내법제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WTO 규정과 불일치하며, 무역구제 문제 생길 경우, 대부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해결한다. <대외무역법>중 “우회방지과 보복조치”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어떤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국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반덤핑조례의 모호성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덤핑마진 산정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거래단계, 거래시기, 판매조건 차이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는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교성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중국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의도가 보인다.

### 다. 국내산업의 확정

중국 반덤핑조례 제11조는 국내 산업을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한 수량화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 자의성이 개입될 의도가 보인다.

### (2)상계관세의 쟁점

중국의 반덤핑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정 의미가 불명확하여 WTO 반보조금협정과 불일치하다. WTO 보조금협정의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 문제는 중국 WTO 회원국 가입 이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 받음에 따라 상계조치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002년 12월 개정된 한국의 “관세법”에 따라 특정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3년 12월까지 중국은 한국의 ‘예외적인 긴급관세적용 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중국 측은 반드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특정 기업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고려해야 한다.

### (3) 세이프가드 관련 쟁점

세이프가드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마찬가지로 발동요건 중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 보복조치 조항에 규정된 “상응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중국의 강한 의지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농업에게 피해를 줄 전망이다. 중국은 거의 모두 농산물은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어,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협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여 예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한·중 FTA 무역구제 대응방안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무역구제 규정을 도입할진지, 한국 국내기업이 피해를 덜 입기 위해 철저한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규정이 엄격하면 중국 측도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되면 FTA 협상 필요성이 떨어진다. 원래 FTA협상은 양국이 각자 자국에 필요한 규정을 가지고 협상하는 원칙이다. 효율성 있는 한중 FTA 협상이 되려면 서로 양보도 필요하다. 그럼 중국 측에게 동의를 요청하려면 중국 쪽에 걱정하는 품목별도 상응한 양보가 주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기회 및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첫째, 정상가격 산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투명하고 표준화된 방안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산업의 수량화된 기준과 규정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피해의 우려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상가격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명확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 FTA 반덤핑조치의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WTO반덤핑 협정과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있어야 생각한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 시 달리 중국의 개정을 기다리면 안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 (2)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대응방안

중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에 위한 자원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 협상 타결 후,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부조금을 많이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과 품목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010년 말까지 중국 상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양국 서로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되는 제도 및 관행이 점검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계속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과 무역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 상계관세조치 협상에서 적용 가능성을 아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최소한 상계관세의 부과 근거는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3)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대응방안

첫째, 양국이 민감한 산업 분야 및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복조치 규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서 <대외무역법>기준으로 협상하면 한국에게 큰 손해가 입을 것이다. 양국 간 다시 공동법을 연구 하거나 WTO 규정에 따라서 실행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 품목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많은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와 비슷한 한중 FTA 세이프가드조치 협상에서도 당해 민감 품목에 대한 양자 간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FTA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도입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에게 적합한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 VI. 결론

본 논문은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연구결과를 이용하며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고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와 추진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주변국가의 정치·외교단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및 국력이 뚜렷이 강화되어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는 변화를 가져 왔는데, 2011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은 6조 9,884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오늘날 각국은 국제정세에 따라 세계화, 협력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많은 국제 기구가 창설되고 여러 선진국이 가입함에 따라 중국도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깨달아, 이런 경제 흐름을 타고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중·동남아시아(ASEAN) 국가 연합FTA, 중·칠레FTA, 중·파키스탄FTA, 중·뉴질랜드FTA, 중·싱가포르FTA, 중·코스타리카FTA, 중·페루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한국, 중동의 GCC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SACU)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중·일 및 인도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위축되어 가고 중국의 수출시장이 불리해짐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기술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광대한 시장 수요와 경제성장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노력에 힘입어 정치·안보상

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이후 교역 규모 64억 달러에서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1,341억 달러, 수입액은 864억 달러로서 교역규모 2,205억 달러로서 약 34배 급신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역량의 증진은 한·중 FTA를 촉진시키며, 2002년 11월 중국 주룽지(朱镕基) 전총리 또한 재임 시부터 한국과의 FTA 추진을 강력히 지지해왔고,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산업별 영향, 민간 분야 도출 등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11월 연구가 종료되고 2006년 11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APEC 각료 회의 중 한·중 통상 장관 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에 한·중 산·관·학 제5차 회의(2008.6.11~13)를 통해 한·중 양국은 FTA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경제·통상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은 민감한 부분인 농림 수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과 양측이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 역내 투자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자본과 기술의 이전 등 경제적 기대 효과가 발생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 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은 역외 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정부는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중 FTA 체결을 위해 정보수집 및 연

구를 위한 산·과·학 연구·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며 양국간의 분야별 유사성, 차이점 또는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이룩해 아시아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한·중 FTA는 피할 수 없는 관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너무 조급한 생각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바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입장만 생각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FTA란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에 추진단계부터 꼼꼼하게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양국이 한 발자국씩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 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느꼈듯이 경제발전의 중심이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한·중FTA는 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는데 큰 걸음이 될 것이며,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이 큰 기회이자 성공의 열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9, p.88.

김수미, 「FTA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2008.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47.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4.

왕연초,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2011.

손찬현, 「한·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박인원,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 모형분석」,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10.

진시원, 「신자유주의적 한·중·일 FTA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10.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9, pp. 94-96.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9.

김세영, 「FTA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사, 2008, p.51.

허홍호,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한국경영사학회, 24(4), 2009.

정인교 등, 「한·중·일 FTA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남영숙 등, 「한중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최낙균 등,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4, 2008. pp.1-2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동 연구소, 2010.p. 6.

지식경제부 200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 2. 중국문헌

于培偉,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餐』, 北京, 第37期, 2005.

李 霞, 「世界FTA發展趨勢與我國的區域經濟合作戰略」 『南方經濟』, 2010.

新華社, 「胡錦濤就建設和諧地區提出的四點建議」, 6月15日, 2006.

劉昌黎, 「世界雙邊自由貿易迅速發展的原因特點與對策」 『世界經濟研究』, 2005.

曹春蘭, 「全球化背景下中韓自由貿易區的經濟效應分析」 『中國海洋大學』, 2011.

屠瑞奮, 「析評中韓自由貿易區建設進程」, 碩士學位論文江蘇省, 中華人民共和國.

人民日報, 「中日韓力推亞洲經濟合作進程」, 『國際周刊』, 12月, 2008.

國務院發展中心研究課題組, 「十壹五G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濟要參』, 北京, 第26期. 2005

東北亞研究院, 「建立中韓 FTA過程中的農產品貿易安排構想」, 2008,5.

## 3. 인터넷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중국상무부 (<http://yzs.mofcom.gov.cn/>)

중국자유무역 홈페이지 (<http://fta.mofcom.gov.cn/>)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 ABSTRACT

A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and promotion of a  
Korea and China FTA

Yinghua Zhao (조영화/ 趙英花)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Bong Hwang

Trade ministers from across the world officially approved China's entry i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November 2001. Since th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hile, Pakistan (FTA) with China, respectively. Currently, Australia, the GCC of Middle East, Iceland, Norway, South Africa and Cistercian have been negotiating the FTA with China. Furthermore, Republic of Korea and India have been researched the FTA with

h China.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amount of trade has been raised by about 26 times, from six billion four hundred million to 168 billion three hundred million till the end of 2008. As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y are highly dependent with each other in economic, history, and culture.

The sig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ignificant effect on not only both countries, but also their neighbor countries. It play significant role both in enhancing the dependency of economic between two countries, and in increment of benefit to political security and insurance by pursuing common benefit and enlarging inter-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China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 (DRC) had reached common understanding in Non-governmental joint study from 2005 to November 2006.

Recently, the fifth conference on Industry, government and science of Korea and China (2008.6.11-13) investigated validity and expectation of Korea and China FTA, and researched current status of related policy and statute. It performed joint research on protective resolutio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s of both countries for the sensitive parts.

Based on the pervious investigation, the thesis researches the following topics. A study on government strength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Korean-Chinese FTA is first performed. Then establishment of Industry, government and science for the analysis and collaboration of informatio

n is investigated. Finally, following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 on commerce, service and origi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olutions are proposed.